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(2015.9.4.)

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15 ~ 58	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
2015 ~ 60	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	3
2015 ~ 61	거창군 기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2015 ~ 62	거창군 농가 식품기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7
2015 ~ 63	거창군 하수도시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	9
2015 ~ 64	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사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	11
2015 ~ 65	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안	13

의안번호 제2015 - 58호

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,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 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(안 제11조제3항)
- 나.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(안 제 13조제1항)
 - O 삭제: 상생협력사업계획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'15. 6. 4. 시행된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 조의3 제4항에 의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 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,

-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 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,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요청 이 있는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
-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0호

.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O 점용료 부과 금액이 5,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
- O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 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 전부과를 해소

- 가. 5,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(안 제3조제3항)
- 나.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반할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점용료금액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
-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 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1호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O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- 가.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·해제 절차 등을 신설함(안 제3조제4항)
- 나.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시 인근주민의 60% 이 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 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다. 인용 법 조문 및 조례명을 수정함(안 제6조, 제7조, 별표 1)
 - O 「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⇒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 - O 법 제24조 ⇒ 법 제25조
 - O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, 제22조 ⇒ 제12조, 제38조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 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 ·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,
- 지정·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·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 변경·변경근거, 변경·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,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
-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 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(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를 삭제함)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
- O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2호

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○ 「식품위생법」에 농업인 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·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- 가. "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"용어의 뜻을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 - O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 퍼센트 이상 사용하고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인
- 나.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조항 삭제(안 제4조)
 - O 농산물 기공지원센터 완공에 맞춰 개별조례 제정
- 다.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(안 제7조, 별표)
 - O 건축물 위치, 구조, 작업장,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

○ 건축물 위치, 구조, 작업장,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 ※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자목4)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등(안 제3조·제5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식품위생법」에 농업인 등이 식품을 직접 제조·가공하는 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.
- O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 등은 별표의 기 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7조 1항 및 2항을 신 설하였음
-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3호

-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O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- 가.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)
- 나.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(안 제17 조제2호)
 - O 제3조제1항제2호·제3호에 따른 신고량
 - ⇒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(안 제23조)
 - 제반 ⇒ 모든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 과 및 과도한 규제규정인 개정조례 제3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
- O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내용을 수정(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)하였음
-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4호

_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⁻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○「상수원관리규칙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 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,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 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.

- 가.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 - O 상수원보호구역: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
 - O 주민공동이용시설: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
- 나.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 -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
- 다.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O 도서관, 농업박물관
- O 공원, 놀이터, 주민운동장(운동시설 포함)
- O 주민자치센터, 어린이집
- O 비영업용으로 관리·운영하는 공동 목욕장, 공동 취사장, 공 동세탁장, 공동 화장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. 다만, 오 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함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상수원관리규칙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,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 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O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 은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5 - 65호

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 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5. 8. 19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5. 8. 19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9. 3.

2. 개정이유

- 「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」의 물류 ·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,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,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(2015.12.31) 됨에 따라
- O 2016. 1. 1 ~ 2018. 12. 31(3년간)까지 학교급식자재 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「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와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 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현황

- O 시 설 명: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
- O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-12번지
- O 규 모: 연면적 1,345 m² (지상2층)
 - 1층(1,054 m²): 입하장, 냉장·냉동 창고, 소포장실, 출하장 등
 - 2층(291 m²): 사무실, 회의실, 식당, 탈의실 등

나. 위탁사무

- O 시 설: 학교급식지원센터 1,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
- O 운 영: 유·초·중·고 38개교 등(10,000여명)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

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2010. 1.: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
- O 2011. 10. :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- O 2011. 11. :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
- O 2012. 4.: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(안) 가결
- O 2012. 4.: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 정/거창원협
- O 2012. 5. : 23개교/4,025명 식자재 조달대행/초등
- O 2012. 9. :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/중·고등 추가
- O 2013. 10. : 38개교/10,000여명 식자재 조달대행/유치원 추가
- O 2015. 1.1 ~ 2015. 12. 31 : 학교급식지원센터 재 위탁/ 거창워협

라. 운영계획

O 위탁 운영

- 수탁기관 : 공개모집
- 위탁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까지 ※ 단, 2015년 9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추진

O 위탁운영 방식

- 급식대상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·납품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유지관리, 인력 및 배송을 포함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일체
- 공급품목의 가격, 생산 공급업체 선정,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현행대로 하며 변경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서 결정
-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무일체 위탁

마. 소요예산

○ 없음

- 본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조달대행 수탁기 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(2015.12.31)에 따라 물류·유통 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자재를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공급·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,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 로서
- O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"군수 가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

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음

-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능력, 시설 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
- O 이에 앞서 민간위탁시의 문제점 분석과 경영수지 분석 등 종 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